

# Nano AL-CVD Cluster System

# 협력관련 협정서

(주관기업, 협동기업간)

- O 과제명: Nano AL-CVD Cluster System
  - Software & RTP Process Module 지원
- O 계약당사자
  - (갑) 주관기관 : IPS Ltd.
  - (을) 협동기업: Kornic Systems
- 위 Nano AL-CVD Cluster system 장비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서 (갑)과 (을)은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 1 조

(을)은 계약서에 따라 (갑)에게 납품해야 할 현물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- Software
- RTP Process Module

#### 제 2 조

- (1)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(을)이 (갑)에게 납품하는 현물을 그 지급일시까지 지급한다.
- (2)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(을)이 (갑)에게 납품하는 현물은 기술개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(갑)이 희망하는 시기에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수행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(1) (신의성실) (갑)과 (을)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(2) (상호협조) (갑)은 전 기술개발과정을 통하여 (을)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개발내용에 관하여 (을)과 협의하여야 하며, (을) 또한 필요한 사항을



(갑)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(3) (자료협조) (을)은 (갑)이 ETRI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조 (계약자의 해지)

- (1) ((을)의 해지) (을)은 (갑)이 본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(갑)에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2) ((갑)의 해지) (갑)은 (을)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기술개발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(을)에게 이를 최고한 후,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4) 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협의시에 (갑)과 (을)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#### 제 5 조 (계약의 변경)

(갑)과 (을)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 6 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의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### 제 7 조 (기타)

본 계약서는 (2)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(갑)과 (을)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4년 08월 18일

(갑) IPS Ltd.

장 호 승

50 9

(을) KORNIC SYSTEMS

정 기 로

